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89

발의연월일: 2020. 9. 28.

발 의 자:정춘숙·남인순·김영진

김윤덕 · 김영호 · 김정호

김상희 · 윤후덕 · 권칠승

강민정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민건강증진법」부칙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함(다만,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).

그러나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. 또한 부칙상 2022년 1 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 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.

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,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 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(안 제25조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업에"를 "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8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에 지원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.

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업에"를 "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8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도록

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에 지원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.

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第25條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 第25條(기금의 사용 등) ① ----------어느 하나에 해 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 당하는 용도에----. 다. 1. ~ 8. (현행과 같음) 1. ~ 8. (생략) <신 설> 8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 8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사 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공 단"이라 한다)에 지워 9. ~ 11. (생략) 9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9 <신 설> 호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보험 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 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 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 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.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第25條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 第25條(기금의 사용 등) ① ----------어느 하나에 해 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 <u>당하는 용도에</u>-----. 다.

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0. ~ 12. (생 략)

② • ③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②(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) 보 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

~ 9. (현행과 같음)
 9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
 8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

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(이하 이 조에서 "건강보험공

단"이라 한다)에 지원

10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.

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<삭 제>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 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지원한다. 다만,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 과할 수 없다.